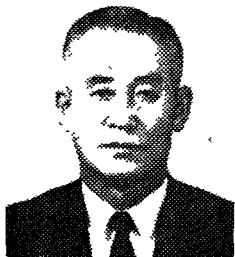


국제적 식량사정과 양계 산업의 전망



유 윤 수

<한국사료협회부회장>

여기에게 게재한 내용은 금번 한국가금협회와 한국 사료협회 및 유지협회의 공동으로 서울 및 대구에서 개최되었던(3月 2日, 3月 5日)양계 강습회에서 발표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국제적 식량생산과 양계산업 전망

70~72년은 대체로 사료가격이 안정되고 배합사료의 품질향상으로 우리나라 양계사육수가 2,000여만수에서 3,000만수로 증가되고 부업적 양계경영에서 진일보하여 전업적 또는 일부 기업적 양계사업으로 등장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양계수수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일반 물가에 비하여 계란 한개의 생산자 가격은 10월 전후로 수익성이 저하하였고 육계 역시 우리나라에서 새로 발전된 산업으로 기복이 심하여 생산자는 고통이 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마트병이 만연하여 양계업자는 사육수수에 비례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다만 국민 1인당 100개에 가까운 우수 단백식품인 계란을 공급하고 닭고기에 있어서도 국민의 육류공급에 공헌(전체 육류공급량의 1/4이상)하였다는 것 뿐이다.

1. 국제적 식량생산

세계인구는 국제연합 추계에 의하면 1970년에 37억으로서 매년 2%이상 증가하여 21세기 초 총 35억년후에는 70억으로 배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계 식량생산은 다음 표와 같이 추계하고 있다 (국제연합추계)

<표 1> 주요 식물질 식량 생산량

(단위 : 억 톤)

식량명	수분합량%	1967	1970
소백	14	2.99	3.16
쌀	16	2.22	2.41
옥수수	14	2.64	2.60
보리	14	1.19	1.39
퀴리	13	0.51	0.55
호밀	13	0.23	0.28
감자	80	3.08	3.10
고구마	69	1.33	1.48
두류(건풀)	—	0.25	1.27
대두	12	0.41	0.47
깨	7	0.16	0.21
사탕	1	0.66	0.73
과물	76~89	1.24	1.34
야채	89~71	0.37	0.41

<표 3> 동물진·신약·생산류

(다음 : 어통)

식량명	수분합량%	1967	1970
고기	65	0.75	0.80
달걀	75	0.19	0.21
우유	90	3.87	4.00
수산물			
어류	75	0.61	0.69

윗표에서 무수물 총량으로 식물성 식량이 12.14억톤이며 곡물이 대략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물성 식량은 0.9억톤으로 곡물의 1/10정도이나 수산물은 축산물과 같이 사료로서 식물성 식량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물 중에서도 양계산물은 우육이나 우유보다 많은 식물성 식량을 사료로서 급여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 년 2%와 비등하게 곡물 생산량도 년 2%증가(1967년 대비 1970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인류의 식량 소비구조

세계 국민의 영양소의 공급은 1일 2,000~3,000카로리이며 곡물로 환산하여 1일 500g정도로 년간 200kg을 소비하게 되며 40억의 인구가 8억톤의 식량이 소요되는 계산이나 이중 1인1일 단백질 섭취량이 50~100g로서 총 영양소의 1/10 카로리를 공급하고 있다.

우리가 가축사료에 양질의 단백질로서 라이신이나 메치오닌을 찾다싶이 사람도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하여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고 있으며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많은 량의 식물성 식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양계산업의 산물을 무수물로 계산할 경우 대략 10배의 식물성 식품을 소비하여 동물성 단백질을 얻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진국가는 총카로리의 40%를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하고 후진국가는 50%이하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므로 15억 톤 이상의 식물성생산에도 끌주리는 국민이 있게 되므로 앞으로의 식량증산이 급선무인 것이다.

전세계 국민의 평균 총카로리의 10%를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한다 하면 현재 생산의 50%를 증가시켜야 원활한 가축증식으로 단백질을 공급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같이 중요한 식량구조가 앞으로 공업적 식량자원(석유단백질이나 핵융합에너지)에 의존하게 되지 않는 한 농업생산 특히 축산물생산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며 우리는 이와같은 중요한 식량생산 분야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영예를 갖고 있는 것이다.

3. 양계산업의 전망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가서 수출 100억불 국

민소득 1000\$을 목표로 나갈때 보다 중요한 동물성 단백질을 구하기 위하여 젖, 고기, 달걀의 생산이 결실하게 되며 생산하여야 될 것이므로 우수한종계, 우수한 관리, 우수한사료가 필요하게 되는바 1972년 말부터 사료분야에서 국제적 파동을 겪게 되었다.

그 원인은

가. 세계적 농산물 감수에다 소련이 세계의 1년 증산분 이상의 2,700만톤 중공 인도등이 600여만톤의 곡물을 미국등지에서 수입하게되고

나. 세계 어분의 62%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폐루의 어획부진과 소련의 해바라기 감산과 인도의 낙화생 감산으로 인하여

다.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60~80% 정도 상승하고 단백질사류에 있어서는 80~130%가 폭등하기에 이르러 우리나라 배합사료도 그의 영향을 받아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변동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전 미국양체업자 강습회에서 제기되었던.

가. 양계산업도 3~5년을 주기로 보아 이를 평균이익으로 계산한다.

나. 양계산업은 과학자보다 예술가의 소질을 갖어야 한다.

다. 식품생산의 일익을 담당한 영예를 갖어라
라. 외부의 압력이 점증한다.

상기 4개항은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이므로

첫째 : 알맞는 품종과 적절한 규모의 양계를 경영하고

둘째 : 사양관리 경영의 합리화로 생산비에 보다 신경을 쓸 것이며

셋째 : 사료는 품종과 경영규모에 알맞는 사료를 생산공장과 기술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선택할 것이며(위탁 사료 배합사료 첨가사료등 단당 가격보다 효율적사료 자기 경영에 알맞는 사료선택)

넷째 : 성심 성의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맷게 될 것이다.

다섯째 :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중간이익을 양계가 및 소비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표 3>

축산물과 사료가격의 비(미국)

구 분	12. 15 (1971)	11. 15 (1972)	12. 15 (1972)	3 년 평균 1957~59	3 년 평균 1963~65
육 계					
육성사료(\$ / 톤)	(103) 95	(107.3) 102	(117.8) 112	—	—
육계(천 / 파운드)	(100) 12.1	(114.0) 13.8	(115.7) 14.0	—	—
육계·사료비 달걀	2.5	2.7	2.5	—	—
산란사료(\$ / 톤)	100 83	110.8 92	122.9 102	—	—
달걀(천/다스)	(100) 34.1	(107.6) 36.7	(126.6) 43.2	35.4	—
달걀·사료비 돼지	8.2	8.0	8.5	—	—
육수수(\$ / 부셸)	(100) 1.08	(111.1) 1.20	(131.4) 1.42	1.10	—
돼지(\$ / 100lbs)	(100) 19.70	(136.0) 26.80	(149.7) 29.50	17.30	—
돼지·육수수비	18.2	22.3	20.8	—	—

<표 4>

세계의 사료곡물 생산량

(단위 : 백만톤)

년도	북미주 (소련 포함)	유럽 주 (소련 포함)	아시아주	남미 주 아프리카주 오세아니아주	계	년도	북미주 (소련 포함)	유럽 주 (소련 포함)	아시아주	남미 주 아프리카주 오세아니아주	계
1960	160.5	136.0	55.0	44.8	396.3	1966	169.9	156.4	65.0	60.4	451.7
1961	141.0	128.2	56.5	43.7	369.4	1967	184.3	163.1	71.0	54.3	472.7
1962	149.5	134.6	3.4	45.5	393.0	1968	181.8	169.6	70.1	56.8	478.3
1963	162.3	136.9	61.3	46.6	407.1	1969	186.3	178.2	69.1	63.0	496.6
1964	143.3	147.6	62.8	49.8	403.5	1970	176.2	174.0	72.0	68.3	490.5
1965	167.4	142.5	61.6	51.6	423.1	1971	220.5	187.3	70.0	66.4	548.2

부 화 장 등 록 철 저

농림부령 제 478호(72. 3. 8)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법적효력이 73. 3. 8일부로 발생됨에 따라 부화업자는 등록에 누락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만일 등록에 누락되는 자나 동법 시행규칙에 위반하는 자는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의법 조치한다 하니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